

# 환경법 개정법률안 모음

## ◎ 환경부공고 제2013-56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30일  
환경부장관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이 공포(2013.7.30)됨에 따라 배출시설 등의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면제요건, 도로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취수시설 상·하류 일정지역의 범위, 폐수처리업자의 재위탁처리 허용사항 등 세부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기업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폐수처리업 등록요건만 갖추면 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한국환경공단이 시장·군수·구청장의 방제조치 대집행 지원시 비용 청구의 범위를 구체화(안 제26조의2 신설) 방제인력비, 멸실·소비된 물품가격, 사용된 기구 수리·임차비, 방제 조치를 위한 물건의 제거·운반 또는 폐기물 처리에 소요된 비용 등을 별도로 규정함.

나. 환경부장관이 수행하는 배출시설 등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의 항목·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안 제26조의3 신설) 10년 단위로 배출시설 등(폐수 다량배출시설,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내 비점오염저감시설, 700m<sup>3</sup>/일 이상의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 기후노출 정도, 기후변화 민감도, 기후변화 적응능력 등을 조사하도록 함.

다.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를 권고받은 수면관리자가 이의 이행을 위해 전문을 구할 수 있는 관계전문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지정(안 제27조의2 신설)

라. 하나의 부지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면제요건을 구체화(안 제75조 개정)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강우유출수를 유입처리하려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신고자와 시설 운영에 관한 규약을 마련하여 제출하도록 함.

마.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도로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한 취수시설 상·하류 일정지역의 범위 구체화(안 제78조의2 신설) 취수시설의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으로 규정함.

바. 환경부장관이 비점오염원의 관리 및 저감에 필요한 기술개발 등을 위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및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지정(안 제84조의2 신설)

# 환경법 개정법률안 모음

사. 폐수처리업 등록의 편의성 제고(안 제90조 개정) 등록서류를 온라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폐수처리업의 법적 등록요건만 갖추면 관할 행정기관이 등록증을 발급하게 함.

아. 폐수처리업자의 재위탁처리 금지 중 예외사항 규정(안 제91조제1항 신설) 최소 10일 이상 폐수의 정상처리가 불가능하여 폐수가 방치될 경우 재위탁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되,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 ◎ 환경부 공고 제2013-571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일  
환경부장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

#### 1. 개정이유

긴급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운행차 수시점검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관리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2075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됨에 따라 긴급자동차와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를 수시점검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별 소음의 관리기준을 정하며, 소음도 검사결과 관리기준을 초과한 소음발생 건설기계를 제작·수입하려는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운행차 수시점검 면제대상 관련 조문정리 및 대상 조정

1) 기존 시행규칙에서 재량사항으로 규정했던 수시점검 면제대상을 당연사항으로 법률체계에 맞도록 조문 정리(안 제42조 개정)

2) 기존 재량적 면제대상 중 현실적으로 확인이 어렵고 점검을 면제할 명분이 부족한 항목 삭제(안 제42조 제2호 삭제)

나. 소음발생건설기계 소음관리기준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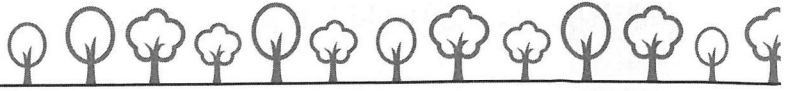
1) 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관리기준을 규정(안 제56조2 제1항 별표27 신설)

다. 소음저감장치 부착명령 등

1) 소음관리기준을 초과한 소음발생건설기계 제작자 등에게 소음저감장치 부착 명령 등 방법 결정(안 제56조의2 제2항, 제3항, 제4항 신설)

## ◎ 환경부 공고 제2013-589호

환경보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들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환경부장관

##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환경보건법 제20조의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국가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지원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법 제20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건강피해인정을 받아야 함(안 제13조의2제1항)

나. 환경부장관은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자에게 유효기간(5년) 동안 건강피해의 상담 또는 검진비용의 지원, 건강피해의 악화방지, 치료 비용의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피해유형, 지원의 대상, 지원 기준 및 범위, 신청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함(안 제13조의2제2항~제4항)

## ◎ 대통령령 제 2013-0593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환경부장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매출액 범위) 법 제76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법 제76조의2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중 법 제2조제21호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말한다. 제60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3(과징금 산정방법 등) ① 법 제76조의6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별표13의2와 같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법률 제11907호, 2013. 7. 16. 공포, 2014.2.6. 시행)으로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기준 초과 과징금 부과 관련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미준수 자동차제작자에 부과하는 과징금 세부사항 규정(안 제60조의2, 제60조의3, 별표 13의2)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자동차제작자가 납부하는 과징금 부과 요율 및 매출액 범위를 정함 ㉓